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992
------------	------

2021년 4월 26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안일자 : 2020년 10월 16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라. 상정일자

○ 제300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2021년 4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가.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

되어 있는 불법 정차·주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정차·주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함
(안 별표)

- 견인료: 40,000원 / 보관료: 30분당 700원(1회 50만원 한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0. 7. 9. ~ 7. 29.

- 제출의견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 빔 모빌리티	○개정된 「도로교통법」(‘20.12.10. 시행)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고, 구조, 크기, 무게, 형태, 사용 등에 있어 자동차나 오토바이보다는 자전거와 유사성이 크므로 견인 규정도 자전거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미반영 -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됨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 빔 모빌리티	○ 적용 시기의 유예 필요(이륜차의 경우 개정 후 2년 유예하였음) ○ 민원발생 혹은 부적절한 주차 기기의 재배치에 관한 기업의 우선적 해결권한 부여 필요 ○ 해당 조례가 아닌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로 이관하여 개정바람	○ 미반영 - 주차위반에 대한 견인 규정은 기제정되어 있었으며, 견인가능 규제가 신설된 것이 아님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별도로 분리함에 따라 견인 소요비용 기준을 마련한 것임 ○ 미반영 - 기기방치에 대한 관리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으며, 관리소홀로 인한 주차 위반 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조치하는 것은 타당함 ○ 미반영 - 「도로교통법」에서 정차·주차위반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시장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한 조례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임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 요

-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20년 9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¹⁾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무단방치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료는 40,000원으로 하고, 보관료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30분당 700원으로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조례개정 필요성 및 적법성

- 서울시의회는 급격하게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사고 및 무단방치 예방 등 이용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19년도에

1) 「도로교통법」 ('20. 9. 6일 개정, '20. 12. 10일 시행)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관련 조례를 제정²⁾한 바 있고,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한편 ‘퍼스널 모빌리티 주·정차 가이드라인³⁾’ 마련으로 주차질서 개선 및 이용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및 관련업체가 시행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와 불법주차 및 이로 인한 보행불편과 보행사고 등을 근절시키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35조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⁵⁾에서 조례로 위임한 ‘견인대상 및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해소와 보행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2) '19. 5. 16일 제정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3) '퍼스널 모빌리티 주·정차 가이드라인'

- 주차권장구역과 주차제한구역을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가능한 곳과 가능하지 아니한 곳으로 구분하여 사례를 제시함

4)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 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 후 략 -

5)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소요비용의 징수 등)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그 차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 후 략 -

③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별첨자료인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별지 제9호서식)⁶⁾”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 견인을 할 수 없다는 자치구 의견⁷⁾이 일부 있으나,

「도로교통법」 소관기관인 경찰청이 주차 위반 ‘개인형 이동장치’는 과태료 부과여부와 별개로 견인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⁸⁾을 했다는 점에서 동 규정은 법적 논란을 해소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견인료 및 보관료 기준의 적정성

- 동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료를 경형 승용·승합 자동차, 이륜자동차 그리고 2.5톤 미만 화물트럭의 견인료와 동일한 “40,000원”, 보관료는 경형 승용·승합·이륜·6.5톤 미만 화물·특수자동차와 동일한 “30분당 700원으로 하되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는 것임

6)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차를 견인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이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라 한다)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 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주차위반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7) 중구 주차관리과-24938(2020.9.23.)호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질의”
-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이륜자동차의 경우 구청에서 견인할 경우 권한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조기가 있음

8) 경찰청 교통안전과-1075(2021.2.24.)호 “법령 유권해석 의뢰 회신(개인형 이동장치)”
- 답변내용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과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주·정차 금지의무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상 위협이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견인이 가능함

※ 조례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개정(개인형 이동장치 신설)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 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 형	40,000원	30분당 700원(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 형	45,000원	
	중 형	50,000원	
	대 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 형	40,000원	
	소 형	60,000원	
	중 형	80,000원	
	대 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 신 설 〉 개인형 이동장치		〈 신 설 〉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 차령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이륜자동차 견인료의 경우 경형 승용·승합자동차, 2.5톤 미만 화물·특수자동차와 동일하게(4만원)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이륜자동차 형태가 경형승용차와 유사하다는 점⁹⁾에서 동일한 견인료 산정은 이해된다 할 것임
-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4만원) 부과와 관련하여 개인이 아닌 공유업체에 주차질서 확립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적극적인 무단방치 해소노력을 독려할 수 있고, 견인업체의 수지타산을 고려하여 행정집행 효과를 확보할 수 있으며

9) 「자동차관리법」 제3조 5.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현 견인료 체계는 2017년 5월 동 조례개정을 통해 차종에 따른 견인료를 차등 적용한 것으로 장기간 동결한 견인료의 현실화를 통해 서울시 견인 업무의 원활화 및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

○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견인대상의 크기와 무게, 견인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경형 승용·승합자동차와 2.5톤 미만 화물트럭과 동일한 견인료를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다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음

○ 또한, 현행 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및 범칙금 부과 기준을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등”¹⁰⁾으로 분류하고 “이륜자동차등”과 구

10)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3의3.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u>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u>	제32조제6호	1) 승합자동차등: 9만원 2) 승용자동차등: 8만원 3) <u>이륜자동차등: 6만원</u> 4) <u>자전거등</u> 및 손수레등: <u>4만원</u>
29. <u>정차·주차 금지 위반</u>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정차·주차 금지 위반은 제외한다)	제32조	1) 승합자동차등: 5만원 2) 승용자동차등: 4만원 3) <u>이륜자동차등: 3만원</u> 4) <u>자전거등</u> 및 손수레등: <u>2만원</u>
30. 주차금지 위반	제33조	
31. 정차·주차방법 위반	제34조	
31의2.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주차방법 위반	제34조의3	
32.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제35조제1항	
33.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제39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4. 안전운전의무 위반	제48조제1항	

비고 3.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함

분하여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견인료 산정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할 것임

-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보관료의 경우 동 개정조례안은 6.5톤 미만 화물·특수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최고 5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해당 기기 가격을 상회하는 보관료로 인해 기기 회수를 기피하는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 보관료 산정을 통해 과도한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기타 의견

- 도로교통법 상 주차위반 견인대상은 모든 차¹¹⁾에 해당되며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를 포함하고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위반 견인대상으로 최근 무단방치 및 주차위반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대상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보도상의 불법주차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의 종류에는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자전거¹²⁾, 자전거, ‘개인형 이동

11)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이하 생략-

장치'가 있음에도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다는 이유로 동일한 주차문제를 야기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하고

공유 전동킥보드인 '개인형 이동장치'만을 견인하는 것은 견인 형평성 시비와 함께 스타트 기업인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의 불만 및 관련 산업 발전 저해를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임

- 한편, 2017년 동 조례 개정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주차 위반 오토바이를 견인하기 위해 '이륜자동차'를 견인대상으로 신설한 바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 '이륜자동차'에 대해 시장·구청장의 단속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견인 사례가 전무한 상황으로 해당 규정이 사문화¹³⁾ 되어 있는 실정임

-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는 주차위반 '이륜자동차' 견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찰청에 단속권한 부여와 관련한 법 개정 등을 요구¹⁴⁾하고 있는 바,

1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 2·3·4륜 자동차도 배기량 및 정격출력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종류에 포함됨

13) 서울시교통지도과, 자치구 내부자료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단속권한이 없어 단속 및 견인 사례 전무한 실정이며 보행안전 확보 및 민원해결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단속규정 신설을 경찰청에 지속 건의함

14) 서울시 교통지도과-8091(’21.3.24.)“주·정차 위반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건의(재요청)”
- ’13.1월부터 총 5회 주·정차 위반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요청함

동 규정이 개정 공포될 경우 ‘이륜자동차’ 사례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관련 법¹⁵⁾에 따라 서울시가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를 주도하여 개정조례안의 목적인 시민안전과 이용질서 확보가 담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한 ‘이륜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 경찰청과 자치구 합동으로 “서울시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시민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15)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주차단속의 특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86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차에 대하여 직접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위반 사실을 직접 적발·단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위반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11.27>

비 고 1. “(과태료·벌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의 서체는 고딕체로 한다. 2. 문자의 색채는 검정색으로 하며 “(과태료·벌칙금) 부과 및 견인 대상 차량” 표지의 바탕색은 옅은 하늘색으로 한다.	No 1. 위반일시 년 월 일 2. 위반장소: 3. 등록번호: 4. 적용법조: 5. 보관장소: 6. 취급자: 소 속: 성 명:	(과태료·벌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귀하의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제156조·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과태료·벌칙금)이 부과되며,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견인대상차량입니다.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경찰서 교통계 (구청 지역교통과)] (전화: -)에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 귀하 년 월 일 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	--

10cm
 20cm

300mm×150mm(일반용지 60g/㎡)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이륜자동차란 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40,000원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견인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분		견인료	구분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	---	-----
	소형	45,000원		---	-----
	중형	50,000원		---	-----
	대형	60,000원		---	-----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	---	-----
	소형	60,000원		---	-----
	중형	80,000원		---	-----
	대형	140,000원		---	-----
이륜자동차		40,000원	-----		-----
〈신설〉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	-----	-----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	-----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	-----
	10톤 이상	140,000원		-----	-----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 차령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차령에 따라 견인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